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김영미 의원)

의안 번호	21- 79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. 8. .

발의자: 강명숙, 김성희, 김영미, 서종수,
이민석, 장덕준, 채우진, 최은하

1.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정의(안 제2조)
- 다. 예산의 지원 등(안 제3조)
- 라.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(안 제4조)
- 마. 지도 및 감독(안 제5조)
- 바. 준용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3조의2, 제5조, 제15조, 제16조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4. 조 례 안: 붙임

5. 예산조치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1. 8. 26. ~ 8. 3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경우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2. “재향경우회”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“마포재향경우회”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예산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
2.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
3.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
4.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경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

니 된다.

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.

제4조(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)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지도 및 감독)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

[시행 2020. 7. 1.] [법률 제17167호, 2020. 3. 31., 일부개정]

제3조의2(사업)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경우회 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
4.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
5.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
6.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제5조(조직)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·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 5. 30.>

-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·도회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 <개정 2011. 5. 30.>
-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1. 5. 30.>
-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5. 30., 2020. 3. 31.>

제15조(재정)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1. 5. 30.>

-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-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1.>

제16조(감독)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1. 7. 13.] [법률 제17892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자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 7. 16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[제목개정 2014. 5. 28.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3조(예산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권동희
연 락 처	02-3153-8322